

방학동 두레주택 심사서류제출 안내

아래 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서류심사대상자는 신청서에 본인이 기재한 내용(점수)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하였습니다.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당첨취소, 계약거부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서류 제출기간

○ 2013. 1. 14(월) ~ 2013. 1. 15(화) 10:00 ~ 17:00

□ 서류 제출장소 : 서울시청 3층 주거환경과(지하철 1,2호선 시청역하차 5번 출구)
도봉구청 5층 도시계획과(지하철 1호선 방학역 2번 출구)

□ 서류 제출절차 : 신청서 작성 후 서류제출

□ 제출서류

서류제출시 유의사항

○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대상 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서류접수 거부 되오니 반드시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(팩스, 우편접수 불가)해야 하며, 홈페이지 및 우편물에 동봉된 개인정보 수집·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
○ 서류제출이후에도 청약자격, 소득, 자산, 주택소유 등 심사과정에서 추가심사(소명) 자료를 제출 요청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.

○ 제3자 제출 시 : 청약자 신분증 및 도장, 대리인 신분증 지참

①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통 (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)

② 임신진단서 원본 1통 (부양가족,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)
※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되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(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)에 한하며 임신확인서,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

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2011년 이후 자격변동사항 포함, 직장·지역 포함) : 만20세 이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(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)

⇒ 국민건강보험공단 : 전화신청 또는 공단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(☎1577-1000, <http://www.nhic.or.kr>)
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

※ 군입대자는 병적증명서 제출(주민센터에서 발급)

※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(거소)사실확인서 등 해당서류 지참

④ 개인정보 수집·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: 안내문 동봉 및 홈페이지 게시문 다운로드 후 제출 (기 제출자 제외)

⑤ 소득입증서류 :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

해 당 자 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• '12년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소득자용)	• 세무서
	신규취업자 또는 이직자	• 해당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해당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•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	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• 수급자 증명서,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	• 동주민센터
자영업 자	일반자영업자	• '1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'12년도에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인 경우)	•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•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확인서/사업자등록증 사본 (사업자인 경우) • 국민연금 소득미신고(미납)된 경우 소득신고 후 해당 확 인서 제출	• 국민연금관리공단 • 세무서
근로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		• '12년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'1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	• 세무서 • 해당직장
비정규직근로자, 일용직근로자		• '12년 소득금액증명원 •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(직 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	• 세무서 • 해당직장
무직자		• '1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'12년도에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 • 2013.1.1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월별 근로소득원 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해당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,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 ※ 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, 학생, 노인 등 포함	• 세무서 • 해당직장

※ 소득 입증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에서 탈락됨.

⑥ 가점대상자 준비서류(대상자에 한함)

가 점 대 상 자	제 출 서 류	발 급 처
청약저축가입자	청약저축가입내역서 혹은 통장원본 (정리요망) ※ 월 1회 인정	• 해당은행

당첨취소 및 계약무효(계약거절)되는 경우(주요사항 예시)

- 임신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,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(예비자포함)된 자가 입주 시 출산(또는 임신유지)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, 태아 수 감소로 당첨하한선 미만인 경우
- 무주택 세대주,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
-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
- 당첨(예비)자,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, 미성년자녀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(예비)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(당첨자는 예비자로도 미 공급)
-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,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.
-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
-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
-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
-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(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)으로 판명될 경우 등

2013. 1. 7.

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